

##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

#### 청 구 인 00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 사건본인과의 관계:

#### 사 건 본 인 ◇◇◇

등록기준지: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 청 구 취 지

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○○○가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.
- 3.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(구체 적으로 기재).
- 4.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.

## 첨 부 서 류

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)

각 1통
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

1통

- 3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
- 4.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(1.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)
- 5. 기타(소명자료)

2000. 0. 0.

위 청구인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법 제11조, 가사소송법 기명 전 2.가사비송사건 가.라류지근 제1호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가사소송법 제43조,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) ·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 이내(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)		
비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		
기 타			

### ※ 제출법원

- 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)의 주소지 가정법원(지방법원, 지원)

### 가사소송법

제44조 (관할)

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 [개정 2013.4.5] [[시행일 2013.7.1]]

1의2. 미성년후견·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